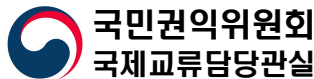


'18년 제2차 G20 반부패실무그룹회의의 참석 결과 보고서

2018. 6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실

1.	2018년 제1차 G20반부패실무그룹회의의 참석 결과.....	3
2.	세부 회의 결과.....	7
붙임 1	회의 일정.....	21

1 2018년 제1차 G20반부패실무그룹 회의의 참석 결과

□ 회의 개요

- 회의명 : 2018년 제2차 G20 반부패실무그룹 회의
- 일시/장소 : '18. 6. 27(수)~28(목)/ 프랑스 파리
Centre de conférences Pierre Mendès France(경제금융부 청사)
- 주관기관 : G20 반부패 실무그룹 공동의장국(아르헨티나, 프랑스)
- 참석자 : G20 회원국 대표, OECD, UNODC, World Bank, FATF 등
국제기구 대표 및 CARICOM, EU 등 지역 기구 대표
※ 권익위 : 청렴총괄과장 김상년(수석대표), 국제교류담당관실 문소희 사무관
법무부 : 조주연 검사(주빈대한민국대표부 법무관)

□ G20 반부패실무그룹회의의 주요 결과

- 2018 제2차 G20 반부패실무그룹은 '공기업 청렴성 제고' 및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고위급 원칙을 중점으로 논의하였으며, 국가별 입장을 종합한 수정안을 도출, 10월 제3차 회의 전까지 서면을 통하여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함.
- 공기업 운영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명시하는 부분에 대하여 중국, 러시아가 반대의견을 표시한 반면, 이탈리아, 영국, 독일, 캐나다 등이 구체적 명시를 주장하는 등 상반된 입장을 보임.
- 우리 대표단은 공기업 운영에 대하여 외부감사 뿐만 아니라 감사원 등 정부기관에 의한 감사도 포함될 수 있도록 문구 수정을 요청하였으며, 의장국은 이를 반영함.

- 이해충돌방지에 대해서는 독일, 미국, 중국 등이 일부 문항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표현을 완화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합의되었고, 우리 대표단의 공직자 채용단계 이해충돌 평가에 대한 표현 완화 요청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등의 지지를 얻어 수용됨.
- 미국이 해외뇌물방지 관련 내용을 금년 정상회의의 선언문에 포함하기를 희망하였으며, 아르헨티나, 호주, 독일, 멕시코, 프랑스 등이 동의를 표함.
- UNODC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부패와 성(性)에 대한 연구' 및 '스포츠 분야 부패에 대한 연구'가 공유되었음.
- 부패 척결의 해결책으로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가설 아래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이를 입증할 근거 자료를 수집중인바 회원국들의 협조를 요청함.
- 스포츠분야 부패가 최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을 소개하였으며, 미국, 이탈리아, 독일 등이 동 내용에 크게 관심을 보임.
- '19-'21 반부패 실무그룹 행동계획 초안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점에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동의를 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몇 개의 우선순위 주제를 선정하여 간결하고 필수적 내용만을 담은 문서로 재구성하는 것에 합의함.
- 국가별 우선순위는 해외뇌물, 인프라, 스포츠 분야 부패 등이 주로 언급되었으며, 의장국은 회의 종료 후 서면으로 제출된 국가별 의견을 취합하여 10월 제3차 회의 전 초안을 공유할 예정임.
- 또한 OECD는 CPI를 대체할 부패측정 수단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제기한바, 의장국은 제3차 회의에서 공식 의제로 상정할 것을 고려하고 있음을 소개함.

□ 정부 대표단 활동

- ‘이해충돌방지’ 및 ‘공기업 청렴성 제고’에 대한 고위급 원칙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특히 ‘공직자 채용 과정의 이해충돌 위험성 평가’ 부분이 완화된 표현으로 수정될 수 있도록 논의를 주도함.
- ‘G20 국가별 반부패시책 시행 장려정책 조사 질문지’ 미응답 국가에 대하여 회신을 독려하여 금년 중 자료집을 출간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함.
 - 우리 대표단은 지난 1차 회의시 의장국에 대하여 상기 질문지가 회람되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와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며, 의장국은 1차 회의 직후 공식적으로 질문지에 대한 합의 과정을 거쳐 회원국에 회람함.
- 세션13에서 논의된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 컨셉노트 작성 과정에 지난 4월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참고자료로 제공하여, 사적 노무 강요 등을 금지하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이해충돌방지 사례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19’21 반부패 행동계획에 대하여 국내 관계부처에 의견을 조회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우리 입장을 의장국에 제출할 예정임.
- 회의 종료 후 미국 국무부 반부패팀이 우리 대표단을 접촉하여 자산 회복 글로벌 포럼(GFAR : Global Forum on Asset Recovery)*의 ‘부패와 관련된 범죄수익 환수의 처리와 송금에 대한 원칙’을 제공하며 우리측의 협력(지지) 가능성을 문의한바, 관계부처와 협의 후 답변을 주겠다고 통보함.

* GFAR : 미국과 영국정부 공동으로 미국 워싱턴DC(‘17.12월)에서 포럼 개최, 자산회복 국제협력, 도난 자산 추적, 법적 틀, StAR(Stolen Asset Recovery Initiative)과의 협력방안 등 논의

- 5 -

□ 관찰 및 평가

- 공기업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고위급 원칙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초안의 상당부분을 삭제하기를 희망하였고, 이에 대해 의장국과 미국, 영국, 독일 등이 원안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등 의견차를 두고 대립하는 양상을 보임.
- OECD에서 TI의 CPI를 대체하여 부패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 필요성이 몇 해에 걸쳐 제기되었다고 언급하였으며, 이에 대해 의장이 G20 제3차 실무그룹 회의에서 정식 의제로 상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힌바,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향후 대응 방안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해외뇌물예에 대한 중요성이 미국과 OECD를 중심으로 대두된바 다수의 회원국이 공감을 표명하였으며, 앞으로 G20 회원국에 대하여 OECD 해외뇌물방지 원칙이 더욱 장려될 것으로 관찰됨.
- 스포츠 분야, 부패와 성(性)에 대한 회원국의 관심이 높아진바,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관찰됨.

- 6 -

2 세부 회의 결과

□ 개회

- 라우라 알론소(Laura Alonso) 아르헨티나 부패방지국 공공윤리 비서관과 기욤 샤베르(Guillaume Chabert) 프랑스 공공재무회계부 다자업무비서관이 공동 의장으로서 환영인사를 하였음. 6.27-28간 논의될 의제를 소개하며 특히 금년 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부속서로 채택될 ‘공공기관 청렴도 제고’와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고위급 원칙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임을 언급함.

□ 세션1, 13 : 이해충돌 방지

- 세션1은 제2차 실무그룹회의 전(6.15(금))에 회람된 초안에 대한 축조심사로서 문장별 수정을 요구하는 회원국별 의견을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취합본을 바탕으로 세션 13에서 토론의 과정을 거침.
- (OECD, World Bank) ‘이해충돌 방지 고위급 원칙’은 이해충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는 공직자의 범위를 규정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함. 회원국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준 덕분에 완성도 높은 초안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이번 회의에서 최종논의를 도출할 수 있기를 희망함을 언급함.
 - *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호주, 캐나다, 중국, 독일, 인니, 일본, 영국, 미국 등이 의견 제출
- (독일) 공직자 채용 단계에서 이해충돌 상황을 평가하고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항목을 삭제하기를 희망하였으며 자국 의회에서 동 내용에 대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설명함.

- 7 -

- 이에 대해 의장은 상기 내용은 이해충돌 방지의 기초적인 토대가 된다고 하면서 채용단계의 평가 및 방지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논의해볼 필요가 있으므로 문구 삭제를 제고를 요청함.
- (미국) 이러한 평가 및 예방조치가 ‘고위급’ 공무원에 한해 적용된다는 문구를 넣기를 희망하였으나, 이에 대해 OECD는 채용단계의 이해충돌 방지는 모든 공무원에 적용되어야 하다고 언급함.
- (중국) ‘공직자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강화한다(facilitate)’는 문구를 ‘추진을 장려한다(encourage to promote)’로 완화하기를 희망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의장국은 G20 공직자 재산공개 고위급 원칙에서 규정하는 수준에 맞추어 수정할 것을 제안함.
- (우리 대표단) 이해충돌에 대한 교육보다는 인지도 제고로 폭넓게 범위를 규정한 문구 변동(educate → promote awareness)을 환영하였으며, 이해충돌방지 ‘매커니즘’이라고 표현된 부분을 정책, 법령, 가이드라인, 행동강령 등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기술할 것을 제안함.
 - 또한 우리 대표단은 ‘모든 공직자 채용과정에서 이해충돌 위험성을 평가하는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구에 대하여, 국가별로 상이한 정책과 법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고,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가 동의를 표함.
 - 샤베르 공동의장은 문장에 ‘적절하게(as appropriate)’라는 표현을 추가한 문구를 제안, 회원국들은 이를 수용하기로 함.
- 향후 일정 : 7-8월 중 의장국이 최종안 도입을 위한 의견을 회람할 것이며, 8월중 최종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 10월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8 -

□ 세션1.1 : 이해충돌 방지와 관리 우수사례 소개

- (남아프리카공화국) 부패방지사무소 주도로 이해충돌 방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중이며, 크게 △행동강령, △재산공개, △반부패 윤리 관리 등 3분야로 나누어진다고 소개함.
- 2004년 제정된 부패행위방지법에 따라 공직자의 선물 수령을 제한하고 있으며, R350.00(한화 약 3만원)을 넘는 선물을 수령할 때는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함.
- 일부 공직자에 대하여 재산 공개를 매년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eDisclosure라는 전자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짐.
- 공직자의 신고 재산은 대중에게 모두 공개되지는 않으나, 미공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 요청 절차를 거친 대중에게 개별적으로 공개하고 있음.
- 러시아는 남아공의 윤리강령에 대한 UNCAC 적용 여부를 질문 하였으며, 이에 대해 남아공은 자국의 부패방지 정책 전반에 UNCAC가 가장 상위 기준으로 설정된다고 답변함.
- (유럽연합(EU)) EU위원들에게 적용되는 행동강령 개정 내용을 소개함.
- 개정된 행동강령은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공직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가족 등이 금전, 선물 또는 접대 등을 받는 것에 대한 제재를 포함함.
-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이 18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되는 등 의무조항이 더욱 확대되고 강화됨.
- 이번 개정은 EU 차원에서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정의를 처음으로 내리는 계기가 됨.

- 9 -

분류별로 운영주체·방식 등이 상이함을 소개함.

- 공기업에 대한 반부패 규제는 **조직적 차원의 규제**와 **직원 차원의 규제**로 나누어지는데, 조직적 차원의 규제는 △자산공개, △이해충돌방지 정책, △선물과 접대 정책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는 반부패 유닛(anti-corruption unit) 또는 윤리 및 이해충돌 위원회(Ethics and Conflict Interest Commission)이 시행함.
- 직원 차원의 규제는 △친인척 감시, △선물과 접대, △이중취업, 투자 등의 측면에서 이루어짐.
- (사우디아라비아) ‘비전 2030’의 일환으로 건강, 교육, 항공 등 16개 분야의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의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을 소개함.
- ‘**민영화 프로젝트 매뉴얼**’을 만들어 모든 민영화의 과정을 규제하고 있으며, ‘**민영화 조달 상소 절차**’를 통해 민영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민간업체가 신속하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방법을 구축함.
- 특히 ‘민영화 프로젝트 매뉴얼’에 따르면, 상호 계약 당사자 또는 이에 관련한 자의 부패행위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을 경우 즉시 계약을 파기하게 됨.
- 공기업 청렴도 향상에 대한 사우디의 정책은 고위급 원칙에서 논의 중인 항목과도 많은 부분에서 일맥상통하며, 특히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법적인 근거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짐.
- (인도) 청렴 총괄기구로서 중앙경계위원회(CVC, Central Vigilance Commission)가 공기업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을 이끌고 있으며, 국회법에 의거하여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소개함.
- 처벌, 예방, 참여 등 3가지 측면에서 부패를 다루고 있으며, 1988년

- 11 -

□ 세션2, 14 : 공기업 청렴성 제고에 대한 고위급 원칙 논의

- 세션2에서는 6.15(금)에 회람된 초안을 문장별로 검토하며 초안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회원국별 의견을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세션 14에서 토론의 과정을 거침.
- 공기업 청렴성 제고에 대한 논의는 공기업 규제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이윤추구를 위한 공공기관의 **기업으로서의 역할**이 상호 대치되지 않는 선에서 기준을 정하는 것에 회원국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음.
- 특히 **공기업 운영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문구에 대하여 중국이 상당부분 삭제**를 요청한바, **러시아가 중국의 의견에 지지를** 표하였으며 **이탈리아, 영국, 독일, 캐나다 등이 구체적 명시를 유지하는 것을 주장**하는 등 대립된 입장을 보임.
- (러시아) 자국에서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등 정부 단위에 따라 각각 다양한 종류의 공기업이 존재한다고 설명하면서 G20 고위급 원칙상의 공기업에 대한 정의를 더욱 구체적으로 내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 향후 계획 : 회의 직후 의장국이 최종안 도입을 위한 의견을 회람할 것이며, 이에 대한 의견을 7월까지 받은 후에 8월중 최종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여 10월 회의에 상정할 예정임.

□ 세션2.1 : 공기업 청렴성 관련 우수사례 공유

- (러시아) 러시아의 공기업은 state corporations, public corporations, state-municipal unitary enterprises, budget-funded entities, joint-stock companies/limited liability companies 등 다섯 가지 종류로 나누어지며,

- 10 -

제정된 부패방지법에 따라 형사기소 등으로 처벌조치를 내림.

- 예방적 차원의 조치로는 조달, 인사관리, 대중 서비스, 회소 천연 자원 분배 등의 분야별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도 제고를 위해 매년 ‘경계인식주간(Vigilance Awareness Week)’을 개최하여 중앙정부와 관련 기관이 모두 참여하여 대중에게 청렴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개최함.
- 모든 공기업은 공기업부(Ministry of SOEs)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진의 (퇴직)공직자 비율이 1/6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음. 또한 기업 운영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치적 인사를 금하도록 되어 있음.

□ 세션3 : 해외 뇌물

- (미국) 해외 뇌물이 G20 반부패실무그룹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기를 바라며, **금년 정상회의 선언문에 해외뇌물방지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기를 희망**함.
- G20 모든 회원국이 해외뇌물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업 스스로도 해외 뇌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체 윤리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해외뇌물을 범죄로 규정하는 정상선언 문구 추가에 대한 미국의 제안에 **아르헨티나, 호주, 독일, 멕시코 등이 동의**를 포함.
- (브라질) 해외 뇌물에 대하여 **법인의 책임에 관한 법률과 조직화된 범죄에 관한 법률** 두 가지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부패방지에 관여하는 정부기관은 총 4개 기관으로, 청렴부, 법무부, 연방경찰, 연방 검찰청이 상호 유기적으로 역할하고 있음.

- 12 -

- 현재까지 100여건 해외뇌물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25명의 자연인이 처벌을 받았으며, 법인의 책임과 연루된 1건의 사건이 브라질, 미국, 스위스 3국간 조정에 따라 ‘관용법’에 의해 처리되었음.

□ 세션4 : 정보 공개

- (OGP, 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는 투명성 제고와 부패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을 목표로 활동하는 다국적 회의체로서, 실소유자 등록, 인프라·조달 분야의 투명성 향상, 부패와 성 문제 등 G20에서 행동계획에서 주요하게 논의되는 주제의 많은 부분이 Open Government 행동계획에서 논의되며, 이 중 많은 부분에 대해 **OGP 차원의 구체적인 지침**을 가지고 있음을 소개함.
- 많은 국가들이 **OGP 행동계획 이행을 통해 G20 기준을 이행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향후 G20 회원국들의 관심과 OGP와의 협력을 요청함.
- (멕시코) OGP 창설 회원으로서 활동해왔으며 정보공개에 대한 고위급 회담, 시민사회와의 협력 방안 도출, 계약 공개 법제화 등에 대한 도움을 얻을 수 있었음.
- (캐나다) 정보공개 기준(open data standard)은 매우 중요한 도구임. G20 반부패실무그룹에서 OGP의 역할이 클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조금 더 강화된 형태로 실무그룹 논의에 OGP가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함.

□ 세션5 : 야생동식물 불법거래 관련 부패

- (UNODC, 프랑스) 현재 실무그룹을 대상으로 취합중인 질문지에 대한 국가별 답변*을 7월말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며, 야생

동식물 불법 거래에 대한 국제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UNODC 홈페이지를 참고해 줄 것을 당부함.

* 우리측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의 협조로 답변 기재함('18.5월)

□ 세션6 : 실질적 협력

- 브라질과 중국이 각각 교통분야 부패방지 및 투자이민에 대한 부패 관련 연구 내용을 소개함.
- 특히 중국은 투자이민의 부패 발생 원인에 대하여 △ 투자액 출처에 대한 합법적 관리 부족, △ 투자이민 신청자의 전문성 검토 역량 부족, △ 기업활동의 준법 관리 부족, △ 관련 절차의 투명성 부족 등을 들며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함.

□ 세션7 : 부패와 성(性)

- (OECD, UNODC) 여성은 부패 취약분야의 주체인 동시에 부패 척결의 강력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주제로 OECD와 UNODC가 진행 중인 연구 내용을 공유함.
- i) 여성은 남성이 비해 부패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네트워크나 재정적 수단**에 대한 접근성이 적고 ii) 성적 불이익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iii) **보복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부패신고**를 꺼려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취약점으로 제시함.
- 반면 지역사회 중심으로 조성된 조직에서는 **여성의 정치 참여가 높을수록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부패가 적게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5 성평등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8개국 평균적으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높을수록 부패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을 소개함.

- 13 -

- 14 -

□ 세션8 : 스포츠분야 부패

- (UNODC) 지난 십여년간 스포츠 분야가 급격하게 진화함에 따라 이에 따른 부패와 범죄의 위험성이 현저하게 증가함. 이는 스포츠 분야가 △**법집행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를 점하고 있고,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제한적**이며, △**실무자의 역량과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이를 위하여 UNODC는 결의안 7/8을 통해 UNCAC 당사국 부패 방지 협력 분야에 스포츠를 추가하여 국제적인 우선순위를 향상 시켰으며, G20, IOC, IPACS(International Partnership Against Corruption in Sport) 등을 통해 국제적 이니셔티브를 강화하였고, UNODC 주도의 역량강화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음.
- 스포츠 분야 부패에 대한 논의는 부패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새롭게 등장한 주제로서 영국을 비롯한 **미국, 이탈리아, 독일 등이 관련 내용에 큰 관심을 보임**.

□ 세션9 : 반부패실무그룹 행동계획

- ‘19-’21 3년간 이행하게 될 반부패실무그룹 행동계획 초안이 회의 직전에 이메일을 통해 회원국들에게 회람되었으며, 이에 대한 회원국간 의견을 나눔.
- (영국) 안보, 변영, 제도에 대한 신뢰 분야를 강조하고자 하며, UNCAC 및 OECD WGB 등 다른 기관과의 협력에 대한 의지를 나타낼 필요가 있음.
- (러시아) 공기업에 대한 러시아의 특수성에 대해서 설명한바와

같이, 국가별 상황에 대한 상호간의 이해가 부족함. 행동계획상에서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는 연구가 포함되기를 희망함.

- (호주) 행동계획에 분야별로 우리의 현재 위치와 상태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필요함. 이는 향후 주제별 이행 전략 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 (미국) 정치적으로 우리 실무그룹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더욱 전략적인 행동계획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실무그룹에서 논의된 의제들이 실제 이행되기 위해서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과 전략이 필요함.
- 또한 행동계획상에 나열되어 있는 주제들을 한두 가지로 묶을 수 있는 상위 개념의 주제를 정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초안의 행동계획이 너무 광범위하며 이미 일정 수준의 성과를 낸 주제는 제외할 필요가 있음. 세금, 인프라, 블록체인 등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하기를 희망함.
- (**우리 대표단**) 지금까지의 행동계획이 8-9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었던 반면 새로운 행동계획은 30여개 세부 주제로 구성되어 있어, 지금까지 동 **실무그룹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거의 모든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중점 논의분야에 대한 의견은 관계부처 의견을 취합중이며,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음.
- (이탈리아) 행동계획상 우리의 지금까지 성과와 주요 내용을 언급하자는 호주측의 의견에 동의함. 계획보다는 실제 이행을 점검하는 국가별 이행보고서에 더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하며,

- 15 -

- 16 -

추가적으로 스포츠 분야에 대한 논의를 강조하고자 함.

- (프랑스) 해외뇌물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함. **G20 모든 회원국들이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을 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스포츠 부패, 채굴산업 부패, UNCAC 이행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 (아르헨티나) 현 행동계획안이 너무 광범위하고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어 필수적인 내용만을 담은 간결한 문서(1-2장)로 재구성하는 것을 희망하며, 해외 뇌물, 인프라 분야에 대한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함.
- (일본) 차기 G20 의장국으로서 현안에서 몇 가지 주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할지 정할 필요가 있으며 각 주제별로 회원국 정부의 관심을 유도할 유연성 있는 이행방안이 필요함. **일본정부는 인프라 부패, 공기업 청렴성 향상, 내부고발자, 기술지원, 법치**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함.
- (인도네시아) 더욱 간결하고 간단하며 시행가능하며 전략적인 가치를 가진 행동계획이 필요함.
- (멕시코) 조세기관 부패방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멕시코는 소득 신고, 회계 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선진적 사례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의제를 주도적으로 진행할 콘텐츠를 갖고 있음.
- 자메이카, 인도, EU, 터키, 남아공 등이 내용을 축소하고 간결하게 만드는 것에 동의함.
- (남아공) 부패방지에 대한 장관급 회담이 열리기를 희망함. 정치권에서 직접적으로 부패방지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음.

- 17 -

- (OECD) **부패정도를 측정하는 수단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현재 많은 국제기구에서 공통적으로 TI에서 제공하는 CPI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를 대체할 측정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러 해에 걸쳐서 언급된 바 있음.
- 이에 대해 알론소 의장은 **10월 제3차 회의에서 부패측정 수단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아젠다를 상정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함.
- 향후 일정 : 회의 종료 후 행동계획에 대한 국가별 의견을 서면으로 취합할 예정이며, 9월 말까지 초안을 공유하여 10월 제3차 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

□ 세션10 : 인프라분야 부패 방지

- (일본) 2015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인프라 분야의 부패 비용이 투자액의 5-20%에 달함. 이는 단순히 비용 문제가 아니라 **인프라 사업의 품질관리를 저하하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함.
- 인프라 사업 부패는 **경제적 비용 증가, 정부와 제도에 대한 신뢰도 저하, 공공서비스 품질 저하 등의 결과**로 나타남.
- 인프라 사업 단계별로 부패 위험성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프로젝트 평가 단계시 타당성 조사 왜곡 위험성이 있고, △구성과 선정 단계시 예산과 구성을 부풀려 작성할 수 있으며, △입찰 단계시 불투명한 입찰과 유착 등에 대한 위험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시행 단계시 프로젝트가 연기될 수 있는 위험이 있음.
- 인프라분야 청렴도 제고를 위해 국제적 기준의 인프라 사업 품질을 향상시켜야 하며,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을 통하여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18 -

- (멕시코) 콜롬비아, 우크라이나, 프랑스, 아르헨티나와 함께 C5(Contract 5)라는 공동체를 출범하여 공개 계약 정보 기준(open contracting data standard)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5개국간 상호 통용되는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음.
- 이는 공공계약에 관련된 조달 절차 전반이 모두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기준으로, 향후 이 기준을 통용하는 국가가 더욱 많아질 수 있기를 희망함.

□ 세션12 : 이행보고서 질문지 - 초안 회담으로 대체

□ 세션13 : 이해충돌방지 우수사례 가이드라인 컨셉노트

- (OECD, World Bank) OECD와 World Bank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해충돌방지 우수사례를 위한 가이드라인 컨셉 노트 개요를 공유하며, 반부패실무그룹에서 이해충돌방지 고위급 원칙이 채택되면 동 내용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계획임을 소개함. 주요 구성은 아래와 같음.
- ① 이해충돌방지 정의와 적용범위에 대한 기준 ② 국가별 차이점을 바탕으로 이해충돌방지를 종류별로 분류 ③ 이해충돌방지의 제도적 정비 ④ 주요 위험분야 분석 ⑤ 투명한 조직문화 건설 ⑥ 재산공개를 통한 이해충돌 관리 ⑦ 이해충돌 인식 제고 및 역량강화 ⑧ 국가별 우선순위에 따른 해결 방안 ⑨ 제재 ⑩ 이해충돌 방지와 인지를 위한 정보와 분석

□ 세션15 : 향후 실무그룹 운영 방안

- 회의전 회람된 초안에 대해 서면으로 회원국들의 의견을 취합할 예정임.

- 19 -

□ 세션16 : 비즈니스 및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 (B20) 인프라 사업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공공 조달 투명성과 청렴도 강화를 위한 논의와 함께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 기준을 민간 기업에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함. 또한 실소유자 투명성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짐.
- 특히 '17-'18 실소유자 투명성 제고를 위한 G20 고위급 원칙 이행과 함께 법인의 실소유자 투명성에 대한 FATF 권고안을 모두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협력하기로 함.
- (C20) 국제투명성기구(TI)는 기업의 실소유자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국가일수록 공기업의 반부패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면서 2015 OECD 공기업 운영 가이드라인과 함께 TI에서 2017년 발표한 '공기업 반부패 가이드라인 우수사례 10가지 원칙'상의 기준을 활용할 것을 제안함.

- 20 -

붙임 1

회의 일정

6.27(수)	
08:30~09:00	등록
09:00~09:20	개회 • G20 공동의장(Laura Alonso, Guillaume Chabert) 환영사 • 제2차 반부패실무그룹 의제 및 진행 내용 소개
09:20~10:50	세션 1. 이해충돌 • 공공분야 이해충돌 방지 및 G20 고위급 원칙에 대한 아르헨티나 발표 및 논의
10:50~11:10	커피 브레이크
11:10~11:40	세션 1.1.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에 대한 우수사례 공유 • 남아프리카, EU 발표
11:40~13:10	세션 2. 공기업(SOEs) 청렴성 • 공기업 청렴성 제고 고위급 원칙 초안에 대한 아르헨티나와 OECD의 발표 및 채택 논의
13:10~14:20	점심
14:20~15:00	세션 2.1. 공기업(SOEs) 청렴성 우수사례 공유 •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발표
15:00~15:35	세션 3. 해외 뇌물 • 미국, 브라질 발표
15:35~15:45	세션 4. 정보 공개 • OGP(Open Government Partnership) 발표
15:45~15:55	세션 5. 야생동식물 불법거래 관련 부패
15:55~16:10	세션 6. 실질적 협력 • 브라질, 중국 발표
16:10~16:20	세션 7. 부패와 성(性) • OECD, UN Women 발표
16:20~16:40	세션 8. 스포츠 분야 부패 • UNODC, 영국, 독일 발표
16:40~18:40	세션 2 계속. 공기업 청렴성 제고를 위한 고위급 원칙 논의
18:40~19:00	폐회 및 단체 사진

6.28(목)	
08:30~09:00	등록
09:00~11:00	세션 9. 반부패실무그룹 행동계획 • 행동계획 초안에 대한 논의
11:00~11:20	커피 브레이크
11:20~12:10	세션 10. 인프라와 반부패 • 아르헨티나 발표 • 일본 발표
12:10~12:10	세션 11. 반부패실무그룹 이행보고서 결의서 초안 논의
12:10~12:40	세션 12. 이해충돌방지 우수사례 가이드 • 공공분야 이해충돌 방지 우수사례 가이드 컨셉노트 발표 - OECD와 World Bank
12:40~14:10	점심
14:10~15:10	세션 13. 이해충돌방지 고위급 원칙 • 이해충돌방지 고위급 원칙 최종 논의
15:10~15:50	세션 14. 공기업 청렴성 제고 고위급 원칙 • 공기업 청렴성 제고 고위급 원칙 최종 논의
15:45~15:50	세션 15. 반부패 실무그룹 향후 운영 방안 • 향후 운영방안 논의
15:50~16:10	커피 브레이크
16:10~16:50	세션 16. 비즈니스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 • B20과 C20 대표가 2018년 반부패 협력 관련 내용 소개
16:50~17:10	폐회